

문 의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과 장 전현진 주무관 최성규	042-481-5925
	2017년 7월 2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7월 19일(수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‘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% 육박’

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특징점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. A사는 모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에 특허 등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B사는 권리 침해를 부인한다. 이에 A사는 형사고소(경찰, 검찰), 권리범위확인심판(특허심판원)을 신청하여 분쟁을 시작하였고, B사도 A사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(특허심판원)을 제기한다. 이렇게 시작된 산업재산권 분쟁은 2~3년간 지속되고, 경찰, 검찰, 특허심판원, 특허법원 등 여러 기관에 방문하여 의견 소명을 하여야 한다. 또 각 사건마다 전문 대리인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수천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. 침해여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정리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(법원)을 통해 또다시 다투어야 한다.

- 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.
-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*,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,800만원,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.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* 15년 국내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(특허청),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(지재위)

-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,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.
-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'95년 설립이후 '17년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·처리하였고, 평균 조정률은 27%이며, '17년의 경우 6월까지 47.6%(21건중 10건 조정성립,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(5건) 제외)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.[붙임]
-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%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.
- 특허청은 '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분쟁상담, 조정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,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
-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특허 심판·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”며, “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소정의 신청서(홈페이지 adr.kipo.go.kr)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(ip.adr@korea.kr)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다.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(☎ 1670-9779)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붙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참고자료

□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

○ 분쟁조정 대상

- 산업재산권, 직무발명, 기술상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

○ 위원회 구성

- (위원장)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 (현행 :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)
- (조정위원) 산업계, 학계, 관계, 법조계 등 15인 이상~40인 이하

* **발명진흥법 제41조(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)**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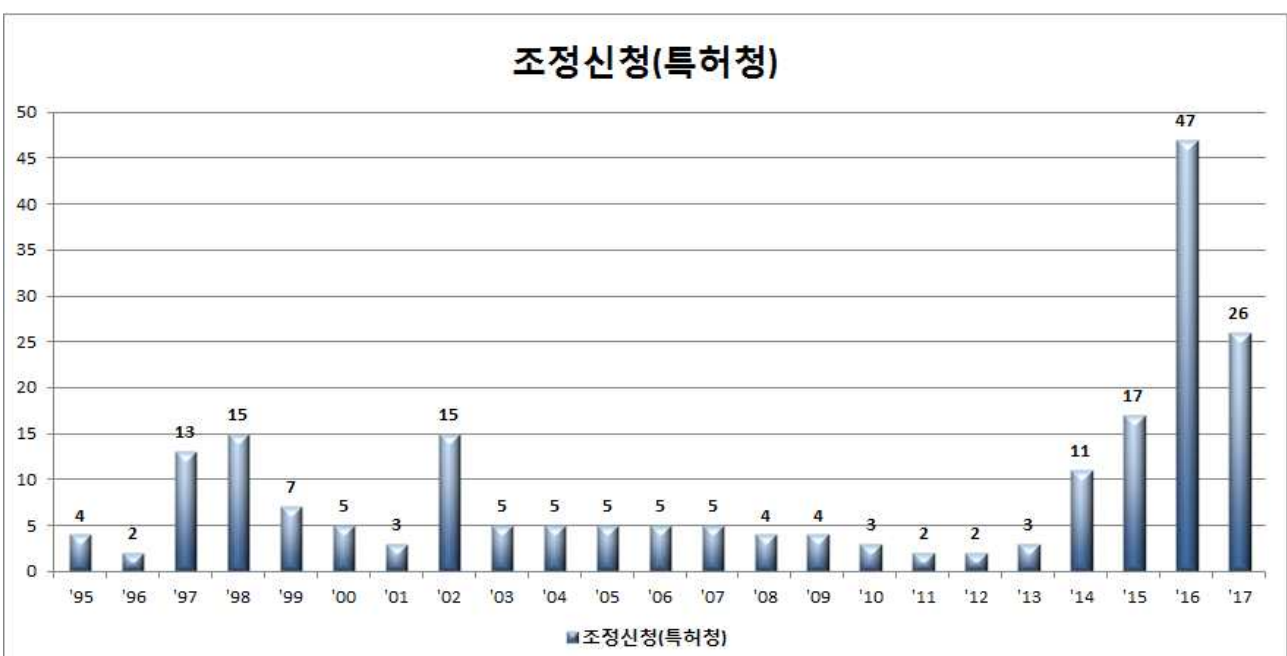
○ 분쟁조정 효력

-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

* **발명진흥법 제46조(조정의 성립 등)**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



□ 조정 절차

